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7월 26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4. 11. 26.)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1. 28.)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현준)

1. 시설부담금 폐지(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¹⁾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이전·철거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존치시킬 수 있는데, 이때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42조(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⑨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6,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5조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하여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시설부담금의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시설부담금)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44조(제52조의2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1.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된 실시계획 2.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의2에 따라 승인 및 변경승인된 재정비시행계획 3.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고시된 물류단지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 그 변경된 계획

나. 검토의견

지난 2024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하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담금 부과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부과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 32개 부담금의 감면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외교부 소관 출국납부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의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보전 부담금, 환경부 소관 폐기물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금을 경감할 것을 발표하였음.

【 비상민생경제회의에 따른 정비대상 부담금 】

부처	폐지(18개)	감면(14개)
기재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 출국납부금	■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문체부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출국납부금
산업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 수질개선부담금 ■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 폐기물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 원인자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시설부담금(산업단지) ■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개발부담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해수부	■ 수산자원조성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방제부담금
산림청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자료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폐지를 결정한 18개 부담금 중 하나로서, 이에 정부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설부담금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6년 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부과실적은 전무하다는 설명임.

참고로, 지난 2017년 10월 동법의 개정 전에는 존치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도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피분양자에게 2건, 약 5,9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으나, 부담금의 이중부과 문제로 피분양자는 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삭제²⁾되었음.

결국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부과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과 실효성이 낮은 시설부담금의 폐지는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3264호,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2016.11.3.) 제안이유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 물류단지 시설부담금을 이중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조정하여 시설부담금 이중부과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지난 2017년 9월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 의결되었음.

안 부칙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이 법 시행 전에 ①승인·변경승인 및 고시된 실시계획과 ②수립(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고시된 물류단지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해당 계획들이 이 법 시행 전에 고시되면 그 고시된 계획에 따라 시설 등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자칫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물류단지계획의 수립·승인만 있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따라 시설 등이 존치되면 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³⁾.

마찬가지로 제4호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만 있는 경우에도 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제1호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으로, 제3호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물류단지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 그 변경된 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을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물류단지 내 기존 시설을 존치하는 경우가 드물고, “존치시설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어 부과 실효성이 매우 낮은바,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동 개정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중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안 부칙 제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제1호 중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및”을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부칙 같은 조 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며, 부칙 같은 조 제3호 중 “수립(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고시된”을 “고시된”으로 하고, 부칙 같은 조 제4호 중 “변경승인되거나”를 “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부칙
	제2조(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 ----- ----- ----- ----- ----- ----- ----- ----- ----- ----- ----- ----- ----- -----.	제2조(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 ----- ----- ----- ----- ----- ----- ----- ----- ----- ----- ----- ----- ----- -----.
	1.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된 실	1. ----- -제29조에 따라----- -----

	<u>시계획</u>	
2. 이 법 시행 전에	제 52 조 의 2 에	2. -----
따라 승인 및	변경승인된 재	-----
정비시행계획		----- <u>또</u>
		<u>는</u> -----

3. 이 법 시행 전에	제 59 조 의 2 에	3. -----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	-----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
특례법」에 따	라 수립(변경	-----
된 경우를 포	함한다) · 승인	-----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 <u>고시된</u> ---
고시된 물류단	지계획	-----
4.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4. -----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	-----
후 변경승인되		-----
		--- <u>변경승인되</u>

	<u>거나 수립이</u> <u>변경되어 고시</u> <u>된 경우(제2호</u> <u>에 따른 재정</u> <u>비시행계획의</u> <u>경우에는 변경</u> <u>승인된 경우를</u> <u>말한다) 그 변</u> <u>경된 계획</u>	<u>어 고시되거나</u> ----- ----- ----- ----- ----- ----- -----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44조(제52조의2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2.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재정비 시행계획

3.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물류단지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 그 변경된 계획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4조(시설부담금) ①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u> <u>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준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u>